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9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9,718,700원, 지방교육세 10,209,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9,718,700원, 지방교육세 10,209,610원, 농어촌특별세 5,485,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25. A단지 내 토지인 [redacted]시 [redacted]구 B 공장용지 12,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토지는 리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1]를 취득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제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563.2㎡ 및 제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3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 10. 7.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3. 1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주시장은 2015. 6. 3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가 존재하나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농어촌특별세 25,049,150원을 추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24,934,810원(과세예고기준일보다 부과일자를 앞당겨 가산세 차이가 발생함)을 부과하

1) 한편 B은 2014. 4. 28. C, D로 각 분할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였다가, 원고가 2015. 7. 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후 [redacted]시장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09,718,700원, 지방교육세 10,209,610원, 농어촌특별세 5,485,920원, 합계 124,861,980원을 추징하겠다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예고 정정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5. 8. 3. [redacted]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redacted]북도지사는 2015. 8. 25. 위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위 지방세 과세예고 정정통지와 동일하게 취득세 109,718,700원, 지방교육세 10,209,610원, 농어촌특별세 5,485,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 직후인 2011. 9. 26.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였고, 자금사정 등으로 잠시 중단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3. 5. 8.에 위 공사를 다시 진행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토지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자신의 목적사업과 동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E에게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소정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던 것이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

나아가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및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8, 11, 12, 14호증, 을 제4, 5, 12, 13,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2011. 5.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1. 6. 10.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점, 원고는 2013. 6. 6.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 및 공장창고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3. 10. 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1.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는 2013. 11. 25. 산업기계, 정밀의료장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각 취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1. 5. 25.로부터 2년이 지나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라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여전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토지에 공장용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완공하였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것 역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처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에 따른 추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다가 스스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달라고 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은 그 규정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면신청이 필수적이지 아니한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당연히 그 세금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2]에 대하여 이를 추징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취득세 109,718,700원×2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5,485,920원을 부과한 부분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금액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취소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인형준

판사 정혜원

2)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이상,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면제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